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보호관리협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소유자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나무병원에 점검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II. 검토의견

1. 청약 절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변경 (안 제10조의6제2항)

- 안 제10조의6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 규정으로, 제2항에서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청약서를 제출한 이후 시·도지사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체결하는 과정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일련의 연속된 절차이므로 위임하려는 행정입법의 종류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시·도 전체의 통일된 집행을 위해서라도 청약 단계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안 제10조의6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u>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u>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u> <u>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u>

	의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u>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u> ④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u>
--	--

2. 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 안 제10조에 따라 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을 이 법 시행 전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는 경과조치를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함.

개정안	수정의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사항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 기 도)